제316회 서산시의회(임시회)
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

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▣ 서산시장 제출 (의안번호 제60호)

2026. 10.

행정문화복지위원회
전 문 위 원

〈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〉
검 토 보 고 서

Ⅰ. 회부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60호

○ 제 출 자 : 서산시장

○ 발의일자 : 2026년 10월 8일

○ 회부일자 : 2026년 10월 13일

Ⅱ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안이유

○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·개편됨에 따라, 관련 조례에서 사용 중인 용어를 현행 법령 및 행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○ 보훈단체의 회원 관리 및 보훈복지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각 보훈단체장의 회원관리 지원비를 인상 지급하여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,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“국가보훈처”를 “국가보훈부”로 변경

(안 제3조 및 제7조제4항)

나. 제7조 성격에 맞게 각 호 외의 부분 변경(안 제7조)

- (현행) 보조금을 교부 → (개정) 지원

다. 서산시 보훈단체 지회장의 회원관리 지원비 인상 (안 제7조제4항)

- (현행) 월10만원 → (개정) 월20만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국가보훈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Ⅲ. 검토의견

1. 개정목적

○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·개편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 및 행정기관 명칭을 현행화하고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보훈단체 지회장의 회원관리 지원비를 월 20만원으로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

2. 주요내용

가. 법적 근거

-「국가보훈 기본법」제18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

규정하고 있고, 제19조 제2항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《국가보훈 기본법》

제18조(예우 및 지원의 원칙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.

제19조(예우 및 지원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나. 국가보훈처장 명칭 정비 (안 제3조, 제7조 제4호)

- 개정안 요지 : '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'를 '국가보훈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'로 변경하려는 사항임

- 개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예우 및 지원대상자)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(이하 "단체"라 한다)로 한다.	제3조(예우 및 지원대상자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국가보훈부 장관---------- ----------

제7조(보훈단체 예산지원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 4.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서산시 보훈단체 지회장에 대한 회원관리 지원비	제7조(보훈단체 예산지원) ---------- ---------- 지원----------. 4. 국가보훈부----------

- 검토의견 :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개편된 현행 행정체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의 용어를 현행 법령 및 행정기관 명칭에 맞게 정비하려는 취지는 타당함

다. 보훈단체 지회장 회원관리 지원비 인상 (안 제7조 제4호 가목)

- 개정안 요지 :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서산시 보훈단체 지회장의 회원관리 지원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하려는 사항임

- 개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4.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서산시 보훈단체 지회장에 대한 회원관리 지원비 가. 지 원 액 : 월 10만원 나. (생 략)	4. 국가보훈부---------- 가. ---------- 20만원 나. (현행과 같음)

- 검토의견 : 현행 조례에서 ‘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보훈단체 지회장에 대한 회원관리 지원비’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번 개

정은 해당 지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액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려는 사항임

-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

라. '보조금을 교부'를 '지원'으로 변경 (안 제7조)

- 개정안 요지 : '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'에서 '지원할 수 있다'로 변경하여 조문의 표현을 정비하려는 사항임

- 개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보훈단체 예산지원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	제7조(보훈단체 예산지원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지원---------- ----------.

- 검토의견 : 제7조 제1호, 제2호, 제3호, 제5호는 보조금 제4호는 기타보상금으로, 보조금과 기타보상금이 혼재되어 있어 성격에 맞게 변경하려는 사항임

【참고자료 1: 서산시 보훈단체 현황】

연 번	단 체 명	연 번	단 체 명
계	9개	5	무공순훈자회
1	상위군경회	6	고엽제전우회
2	전몰군경유족회	7	원남전참전자회
3	전몰군경미망인회	8	공복회
4	6.25참전유공자회	9	특수임무유공자회

【참고자료 2: 충남 도내 각 시·군 지회장 활동비 지급 현황】

시·군	지회장 수당	지회장 활동비	비고
천안	없음	• 단체별 연300만원 (보훈단체협의회 제외)	- 법정운영비에 포함해 지급 - 보훈단체 보탬e카드로 지출
공주	없음	없음	- 단체별 출장여비 지급(월 15만원 내)
보령	없음	• 월10만원	- 시에서 지회장에게 직접 계좌이체 - 용도 제한 없음
아산	• 단체별 연240만원 (보훈단체협의회 제외)	없음	- 법정운영비에 포함해 지급 - 보훈단체에서 지회장에게 매월 계좌이체
서산	없음	• 월 10만원	- 분기별, 기타보상금으로 시에서 직접 지급
논산	없음	• 월 10만원	- 지회장 회원관리비 지원 보훈단체 지원-기타보상금으로 지급 - 시에서 직접 지회장에게 계좌이체
계룡	없음	• 단체별 연360만원 (월30만원)	- 법정운영비에 포함해 지급 - 출근했을 경우 활동수당 명목으로 일15,000원
당진	없음	없음	
금산	없음	• 단체별 월10만원 (보훈단체협의회 제외)	- 법정운영비에 포함해 지급 - 보훈단체 보탬e카드로 지출
부여	없음	• 단체별 월10만원 (보훈단체협의회 제외)	- 시에서 지회장에게 직접 계좌이체
서천	없음	• 단체별 월20만원 (보훈단체협의회 제외)	- 법정운영비에 포함해 지급 - 매월 계좌이체
청양	없음	• 월 25만원	- 기타보상금 지회장 계좌로 지급
홍성	없음	• 단체별 연200만원 (보훈단체협의회 제외)	- 법정운영비에 포함해 지급 - 보훈단체 보탬e카드로 지출
예산	없음	• 단체별 월10만원 (보훈단체협의회 제외)	- 법정운영비에 포함해 지급 - 지회장 계좌로 계좌이체
태안	• 단체별 월 10만원 (분기별 지급)	• 출장여비 지급	- 지회장 수당(군 예산 지급-기타보상금) - 지회장 활동비(법정운영비-출장여비 지급)

5. 종합검토의견

가.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서 개편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보훈단체 지회장의 회원관리 지원비를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
나.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우 및 지원은「국가보훈기본법」제18조, 제19조에서도 명시하고 있고 보훈단체 지회장 개인에게 회원관리 지원비를 상향지원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목적과 지원근거가 조례에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하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다. 또한 충남 도내 타 시·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천안, 계룡, 서천, 청양 홍성 등 5개 시·군에서는 2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음【참고자료 2】

라.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